

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 공무직근로자(통계조사관) **섬지역 제한 채용 공고**

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 **전주사무소** 공무직근로자(통계조사관)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※ 섬지역(부안군 위도) 거주자 제한 채용 입니다.

2025. 10. 29.
호남지방통계청장

1. 채용인원 및 근로조건

채용부서: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 **전주사무소**

구분	인원	채용일	계약방법	근로조건	임금 ^{25년 기준}
공무직근로자 (통계조사관)	1명	2026.1.1. (목)	근로계약 (만 60세 정년)	1주 40시간, 주5일 근무 (섬지역^{위도} 거주자)	기본급: 1,911,650원(호봉제), 급식비 140천원, 표본관리비 200천원, 명절휴가비(연 2회/각550천원)

※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은 『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』, 『통계청 취업규칙』, 『통계청 임금협약서』 등을 따름

※ 근무장소: (전주사무소)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우전로 238

※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안군 위도(섬) 거주자로 제한함

수습기간: 2026. 1. 1. ~ 2026. 3. 31. (3개월)

○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적격성 심사 후 정규 임용(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)

2. 담당업무

직종	주요담당업무
통계조사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 소속 부서에서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조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 -전주사무소: 전주, 김제, 완주, 부안 주요업무: 대상처 방문현장조사(조사표 작성), 응답자 설득, 전화 질의 조회, 명부 수정보완, 전산처리 등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조사 업무 상시 수행 등 주요조사: 가계동향조사, 경제활동인구조사, 집세조사, 광업제조업조사, 서비스업동향조사, 농가경제조사, 농축산물생산비조사, 농작물생산조사 등(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참고) 기타 조사관련 지시사항 처리 등

3. 채용방법

1차 서류전형 → 2차 면접전형 → 최종합격자 발표 → 결격사유 유무 정보 확인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) → 이중 취업 여부 확인(겸업 불가) → 채용 확정(수습기간: 3개월) → 적격성 심사(수습평가) → 정규 임용

1차 서류전형

○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〈채용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선발인원〉

채용인원(분야별)	서류전형 선발인원
1명	5배수

2차 면접전형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○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공무원수행자로서의 소양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
최종합격자 선정 기준

○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

○ 면접(2차)점수가 동일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
○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의결에 따른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4. 응시 자격요건(판단기준일: 공고일 현재)

□ 필수요건
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9세 이상이며 만 60세(정년) 미만인 자
 - ※ 응시연령은 면접일('25. 11. 19.) 기준이며, 복수국적자의 경우 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
- 통계청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),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채용기간 동안 겸업 및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
채용 결격사유

-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
 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면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

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예시 :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□ 가점 및 우대사항

-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우대 :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가점 부여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4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가점 부여
 - ※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저소득층, 다자녀 양육자, 북한이탈주민 우대 : 1차 전형에 반영
 - 저소득층의 범위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0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
 - 다자녀 양육자 : 만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
 - 북한이탈주민 :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)
- 장애인 우대 : 1차 전형에 반영
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
불합격 처리 대상

- 채용서류 미비자, 거짓 작성자(2년간 불합격 처리)
- 최근 3년간 국가데이터처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
- 정당한 사유* 없이 최근 2년간 국가데이터처(소속기관 포함)과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한 자
 - * 불가피한 경우로 합리적인 사유(질병, 가족간호, 타지역 이사, 통계청 및 소속기관 정규직 채용 등)
 - **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(교육포함) 이전에 포기한 경우는 제외
-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5. 심사일정

- 접수기간 : 2025. 10. 29.(수) ~ 2025. 11. 12.(수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E-mail: naga0163@korea.kr
 - 방문 접수는 평일 09:00 ~ 18:00 내에 접수 (접수시 접수확인 문자메시지 발송)
 -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(접수시 접수확인 문자메시지 발송)
 - E-mail 접수는 마감일 18:00 내에 접수 (접수 확인 메일 발송)
 - 접수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반영되지 않음
 - 접수장소 : 아래 참조

담당자	주 소	전화번호
조사지원과 나선희	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(동천동 584) 1층 호남지방통계청 고객지원실	전화: 062-370-6022 naga0163@korea.kr

- 서류심사 : 2025. 11. 14. (금)
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: 2025. 11. 14. (금) 오후 16:00
 -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<http://kostat.go.kr> 채용정보(합격·공지)에 공고
- 면접심사 일자 및 장소 : 2025. 11. 19.(수) 장소: 채용부서
 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세부일정 공고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5. 11. 20.(목) 11:00 공지 및 합격자 개별 문자 안내
 -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<http://kostat.go.kr> 새소식/ 채용정보(합격·공지)에 공고

6. 제출서류

필수 제출 서류: **자필서명 필수(미 서명시 접수 불가)**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-첨부1
- ② 응시원서-첨부2
- ③ 자기소개서-첨부3
-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·이용 동의서-첨부4
- 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-첨부5
- ⑥ 주민등록등본 1부 (공고일 이후 발급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-첨부6)

추가 제출 서류(해당자에 한함)

- 경력증명서 1부
 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(2025. 7. 30. 이후)
- 자격사항 증빙서류 (※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-첨부6)
- 우대사항 증빙서류 (※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-첨부6)
- 국가유공자 등(취업 지원 대상자) 가점(5~10점)/ 제출서류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

평가기준 상세

- 자격증 점수(5점)

자격증	점수
- 사회조사분석사 1급,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보안기사	5
- 사회조사분석사 2급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컴퓨터 활용능력1급, 전산회계운용사 1급	3
-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전자계산기능사, 전산회계운용사 2·3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서	1

※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

○ 기타 점수(5점)

항 목	점 수	내 용	비 고
저소득층	2	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족 세대주 ※ 관련 증빙서류 제출	※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합계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가능
다자녀	2	- 다자녀(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2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) ※ 주민등록등본 제출	
북한이탈주민	2	- 북한이탈주민 ※ 북한이탈주민 확인서	
장애인	3	- 장애인등록소지자	

○ 국가유공자 등(취업 지원 대상자) 가점(5~10점)/ 제출서류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

7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**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<첨부7> 서식 참조(해당자에 한함)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

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

-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,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
-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**'25. 11. 12.(수) 18시 까지**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- 매 채용 전형 참여시 **신분증 원본 지참** (미지참 시 응시 불가)
- 최종 합격자는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 해당(채용)부서에서 3개월간 수습을 진행하며, 종료 10일 전 수습기간 평가를 통하여 정규채용 여부를 결정함
※ 평가결과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- 문의사항: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**나선희(062-370-6022)**

<첨부5 필수>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운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2. 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’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익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 년 월 일
생년월일 . . . 지원자 (서명)

<첨부6 해당자에 한함>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가데이터처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공무원 근로자 채용 및 관리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이용 대상	행정정보명	이용 대상	행정정보명
<input type="checkbox"/>	국가기술자격증(대한상공회의소)	<input type="checkbox"/>	장애인증명서
<input type="checkbox"/>	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	<input type="checkbox"/>	주민등록표 등·초본
<input type="checkbox"/>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	<input type="checkbox"/>	취업지원대상자증명
<input type="checkbox"/>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	<input type="checkbox"/>	한부모가족증명서

*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체크(☑)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주민등록번호	-
--------	---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5 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전화번호 :

